

아. 손해배상(언)159)

☐ 손해배상(언)(중첩관계, 예비적 병합)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에이비에스(이하 '피고 에이비에스'라 한다)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에이비에스 홈페이지(주소: abs@naver.com) 초기 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에 별지 1 추후보도문 제목을 통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추후보도문 제목 및 본문이 별지 2, 3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추후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피고 에이비에스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에이비에스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에이비에스에이앤엘(이하 '피고 에이비에스에이앤엘'이라 한다)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에이비에스 홈페이지(주소: abs@naver.com) 초기 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에 별지 1 추후보도문 제목을 통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추후보도문 제목 및 본문이 별지 2, 3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추후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피고 에이비에스에이앤엘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에이비에스에이앤엘은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갑 방송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위 홈페이지의 인터넷 뉴스란에 '병 야구협회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정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혐의는 정이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이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위 증명서 발급행위는 병 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문제에 불과하고,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명서 기재에 허위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정의 갑 방송사 등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주위적으로는 갑 방송사와 위 기사를 작성한

무를 상대로 갑 방송사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무와 공동하여 정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정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기사가 게재된 후 을 회사로부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기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내지 위 기사 담당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주체는 위 인터넷뉴스 페이지 운영주체인 기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갑 방송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무와 기 회사가 위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 등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 111367 판결 : 확정)

❏ 손해배상(언)(초상권 침해,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3.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① 언론매체에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②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서울남부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 손해배상(언)(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황토 분쇄기구인 쇠볼의 마모 등으로 제품에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사안에서, 그 보도가 위 황토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중 중금속 검출 부분과 중금속 피부 흡수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제조과정 중 쇠볼 마모 등으로 유입된 쇳가루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 항소)

☐ 손해배상(언)(명예훼손,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〇〇일보사, 주식회사 〇〇일보사, 주식회사 〇〇신문사, 주식회사 〇〇일보사, 주식회사 〇〇일보사, 〇〇방송공사는 각 원고 유〇〇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조〇〇에게 1,666,667원, 원고 정〇〇, 정〇〇, 정〇〇에게 각 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8.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참조판례]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그 조정 방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衡量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